

산재장애인에게도 일터가 필요합니다.

Md.b.7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공청회자료집

발행일 : 1995년 7월 19일
펴낸곳 : 산재추방대책회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연락처 : 868-2379(산재노협)
242-3044(전장협)

1995.7.
일시 : 1995년 7월 19일 (수), 오후 6:00~9:00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전국산업재해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
주관 : 산재추방대책회의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후원 : 한국재활재단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원직복직은 권리입니다.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공청회자료집

주최 : 전국산업지역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

주관 : 산지추방대책회의 / 전국장애인가족협회

공청회를 준비하며. . .

삼풍백화점 붕괴로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번 붕괴에서 보았듯이 직장에서 일하던 나이 어린 노동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게 됩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수 많은 재해로부터 노출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조심하거나 안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재해를 막거나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또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내재되어 신체적 장애는 물론이고 정신적 장애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재해는 경제적 관계 속에서 자본의 이윤증식 속에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그중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산재로 인한 재해자는 총 8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2,900명에 이릅니다. 하루 7,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물들어 조선소에서 35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해 일을 하다가 신체장애를 당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은 얼마 안되는 보상금을 받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터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은 주로 보상의 문제에 한계 지워져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보상체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라는 보상의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동권'의 확보 차원에서 직접 원인이 된 기업이 책임지고 지속적인 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산재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를 몇 푼의 보상금으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재장애인 노동자는 일터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노동자와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 현실화와 의학적 재활은 물론이고 직업재활(교육, 재활기관) 등을 통한 사회적 재활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산재추방대책회의'는 산재장애인 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이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재해장애인 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해결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고민을 확대하고 이후 방향을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한 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많은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여, 지속적인 실천투쟁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 차

진행일정	4
------	---

주제발제문

① 산재장애인 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 남구현(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이인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5

토론발제문

② 산재장애인의 실상과 직업재활 김학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21
③ 전체 장애인 문제 속에서의 산재장애인의 문제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31
④ 산재장애인 노동자문제와 사회보장에 대하여 윤우현(전국민주노조총연맹준비위 집행위원)	45
⑤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형락(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	51

부록

⑥ 장애인 고용촉진사업계획('94~'98)	63
-------------------------	----

진행일정

사회자 : 이용근(민정련 전 노동위원장)

주제발표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든발표

김학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장)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육우현(전국미주노조총연맹준비위) 친핵원칙

기) 말론(미주단 국회의원)

기현량(근로복지공단·보험공연·국장)

이데올(사계의) 관료(官吏)와 관직(官職)

질의응답

주제박지

산재 장애인 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

남구현(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인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산재 장애인 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

남구현(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인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목차

- I. 들어가며
- II. 산재노동자 보상실태 및 관리운영체계의 변화
 - 1. 산재발생 추이
 - 2. 산재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3. 장애인의 실태와 고용
 - 4. 근로복지공단 출현의 배경
 - 5. 직업재활 현황과 과제
- III. 나가며

I. 들어가며

연이은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무너지는 백화점, 교량 그리고 폭발하는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기간 단축, 부패 공무원의 뇌물 수수, 허술한 안전 관리체계 등의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들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맹목적인 기업의 이윤추구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는 자본의 테러이다.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대형사고들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급, 계층,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자본의 무차별한 인명살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학살이 벌어지는데도 눈길을 끌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

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생산현장이다. 매년 십만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며, 그 중에 사망자만 2천명을 상회한다. 사망자수는 문민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93년에는 2천2백10명이 94년에는 468명이 증가한 2천6백78명이 사망하였다. 사상자의 규모에 있어서 대형참사에 비할 바가 아니며, 광주항쟁 당시의 학살에 견줄 수 있는 대량학살이 매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대형참사나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나 그 근본 동인은 다름 아닌 자본의 무한한 자기가치 증식 욕구이다. 그러나 생활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형참사의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인 반면, 생산현장에서의 피해자들은 노동자계급에 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는 일상적이고 사상자가 정규적으로 발생하지만, 대형참사는 불규칙적이다. 생산과정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해 벌어지는 자본의 테러는 작업현장 외부의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안 띄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을 제외한 여타 계급, 계층이 산업재해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소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 유례 없는 산업현장에서의 엄청난 재해가 우리나라의 유혈적인 자본주의화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에 참여하다 죽거나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경제 전쟁에 참여하다 부상당한 산업정규군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은 이제까지는 주로 보상의 문제에 한계 지워져 있다. 즉, 산업재해보보험제도의 보상체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보험은 기업가들이 보상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들 사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애초에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또는 산업재해 노동자의 사회적 재활과는 거리가 멀다. 산재 장애인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재 노동자와 장애인이 연대하여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산업재해 장애인 노동자의 실태와 주로 직업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II. 산재 노동자 보상실태 및 관리운영체계의 변화

산재 노동자의 보상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장해의 치료 후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산업재해의 실태 및 산재보상보험제도의 현황, 최근 노동부 직속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된 관리운영체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산재발생 추이

산업재해 발생의 추이를 보면, 산업재해발생의 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과 천인율(재해자수/근로자수) 및 재해근로자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중대재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은 199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해의 빈도는 감소하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도에 산업재해로 인한 총 재해자수는 90,288명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2,210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2.45%를 차지하였으며, 영구적 장애가 남는 신체장애인은 33.15%(29,932명), 직업병환자는 1.57%, 부상 및 질병자는 62.8%였다. 재해정도에 따른 재해발생 추이를 보면 재해자 총수 중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5-1989년에는 1.17-1.35%, 1990-1991년에는 1.68-1.79%, 1992-1993년에는 2.31-2.45%로 최근 4년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신체장애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5-1985년에는 15% 미만, 1986-1989년에는 15-20%, 1990-1991년에는 20-30%, 1992-1993년에는 30-34%를 차지하여 최근 4년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표 1 참조)

최근 들어 산업재해자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자수, 신체장애인수는 오히려

1 정부의 공식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만 포함되고 있어 불완전하다. 애초에 소규모 작업장 노동자와 일용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무재해운동의 결과 산재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치료한 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80년대 말 이래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 등도 포함되지 않아 왔으며, 이들이 소위

증가하고 있고 직업병환자수는 숫자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재해자수에서 차지하는 직업병 환자수의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재해발생 이후에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재활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의 추세를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된 1964년부터 1993년까지 30년동안 총 276만여명이 산재를 당해 그 가운데 36,000명이 사망하고 39만 여명이 장애인이 되었다. 1984-1993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총 1,139,534명으로 최근 10년간에 보다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중 영구적으로 신체장애가 남은 재해자 및 사망자는 277,724명으로 총 재해자 중의 24.4%를 차지했다. 이는 산업재해 근로자 100명당 24명이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사망하였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동안 (1984-1993) 노동력을 완전 상실하여 산재보상연금 수급대상인 장해 1-3등급의 재해자는 2.1%(5,889명),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수급대상인 장해 4-7등급의 재해자는 7.1%(19,629명), 그리고 장해보상일시금 수급대상인 장해 8-14등급의 재해자는 9.4%(25,965명)이었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완전히 상실하여(장해등급 1-3급) 취업현장을 완전히 떠난 근로자수는 25,518명이었다. 이는 산재를 당한 개인 차원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의미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능인력의 완전손실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보장비용 지출증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1993년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금융·보험업 등은 제외) 163천개소 6,943천명에 이르고 있다. 적용범위는 보호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미흡하며, 산재라는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당연적용제외대상에 대한 적용확대가 필요하다.

보험급여는 6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며, ②휴업급여는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보상, ③장해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④유족급여는 유족급여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또는 연금(유족 수

3D업종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치 상으로 나타나는 산재율의 감소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에 따라 연소득의 52-67%), ⑤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⑥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 이후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에서 1급: 329일분). 그 외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시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다.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보장의 수준을 평가하면 휴업급여 70%의 임금대체율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2/3 - 80%수준) 낮은 수준만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급여수준을 충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해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활능력을 거의 상실한 경우의 노동자에게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수준이다. 특히, 재해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실질적인 임금대체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3년의 보험급여 실적을 보면 연간 보험급여 총액은 8,725억원이며, 재해자 1인당 평균 97만원을 보상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급여 총액 중 건설업에 38.5%, 제조업에 33.1%, 광업에 14.7%가 지급되었으며, 1인당 보험급여는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재보험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공존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다. 첫째, 피재근로자는 요양이 끝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대개 1-2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둘째, 사업주는 산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이중부담을 가진다. 셋째, 손해배상에서는 산재의 원인 중 사업주의 과실을 얼마나 결정하는가 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의 원인을 기계방호장치 고장이나 미설치보다는 노동자의 부주의 쪽으로 왜곡하여 신고하는 경향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산재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자는 산재보험의 개념과 역사, 업무상 재해판정, 의료기관 관리, 각종 급여 지급, 재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대한 의의와 철학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임자로부터의 업무경험을 전달받으며 업무를 익히고 있다. 산재보험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 담당자들에게 업무배치 전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업무와 관련된 법

령 및 행정규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산재로 인한 치료 및 보상뿐만 아니라 산재예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산재보험정책은 산재예방정책과 결부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산재보험과 산재예방과 연계된 정책연구가 희박하였으며, 그나마 연구인력조차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 공단은 산재예방과 산재보상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선 산재예방투자와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율이나 산재보상비용간의 관계를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시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아울러 산재보상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보상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동자는 각출할 의무가 없지만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사무관리비, 보험시설비 및 재해방지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무업무비 및 재해방지비, 보험시설비 등의 관리운영비는 1992년의 경우 693억원으로, 현재의 국고지원금(102억원)으로는 관리운영비의 14.8%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책임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에 포함되는 인건비, 사무비 등의 업무비는 물론이고 보험시설비, 재해예방비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책임이라 하겠다.

3. 장애인의 실태와 고용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인의 실태를 보면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후천성 장애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의 조사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의 95.0%, 시각장애인의 93.7%, 청각장애인의 93.1%, 언어장애인의 77.1%, 정신지체인의 55.7%가 출생후의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한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각 장애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이하지만, 가시적 요인인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과 비가시적 요인인 위생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환경의 문제가 장애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노동양상은 먼저 전체인구에 비해 비경제활동이 많으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1990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435,796명중 293,338

명이 취업해 있는데, 이들 중 33.1%가 1차산업에 종사하며, 생산, 운전, 운수, 장비 단순 노무자와 농림 수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근로복지서비스 수준과 근로자가 요구하는 복지욕구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1990년 근로복지공사가 실시한 근로자 복지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8년 조사할 때보다 근로복지 만족도에서 '만족한다'가 5.4%감소한 반면, '부족하다'로 응답한 사람은 4.6% 증가하여 전체응답자 중 70%가 공공근로복지의 수준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근로복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공근로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곧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중대하는 근로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도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4. 근로복지공단 출현의 배경

1994년 12월에 개정·공포된 산재보상보험법은 1995년 5월 1일을 기하여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하여 산재보험업무의 집행, 산재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예방 및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근로복지공사를 정부 출연기관인 공단체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산재보험서비스 업무의 공사 이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의 추진, 공기업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른 산재병원 운영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해오던 산재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게 된 직접적인 상황 변화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고용보험의 도입에 기인한다. 고용보험을 담당하기 위한 일선기관으로 직업안정기관이 노동부 지방조직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의 공단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사의 핵심사업은 산재환자의 진료 및 의료재활을 위한 산재병원의 운영이었다. 산재병원을 위한 연간 예산은 800여 억원에 불과한 반면, 새로 맡게 될 산재보험업무는 연간 예산액이 1조 5천억 원에 보험급여 등 지출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 예산규모면에서 기존의 의료사업의 20배 가까이되는 엄청난 규모로서 공사의 핵심사업이 의료사업에서 산재보험사업으로 전환되게 되고 이는 공사의 조직성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근로복지공사의 조직체계를 공공성과 기업성(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주로 공공성만 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산재병원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있어온 터에 기존 업무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큰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근로복지공단 운영의 효율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냐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집행업무와 공공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사업의 독점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경쟁이 거의 없는 데서 오는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서비스 질의 저하 등과 같은 독점의 폐해를 노출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폐해를 노출시킨다면 산재보험 및 공공복지사업의 집행업무를 계속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산재보험은 민간보험회사에서, 근로복지서비스는 노동조합총연맹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당사자인 기업 측과 노동자 측이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는 운영과정에서 직접 당사자들의 참여가 제한된 채 퇴직 장성이나 퇴직 고위관료의 일자리제공처가 되는 한편, 잉여 기금은 경제 논리에 따라 사용되어 왔는 바, 이러한 관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될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및 공공근로복지에 대한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계속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 업무를 적어도 정부가 직접 수행할 때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정부·기업·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많은 공단형태의 조직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율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의 공단조직은 자율성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진취적 사고의 결여, 무사안일, 관료주의적 경영, 고객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감독관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공단조직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가 된다.

5. 직업재활 현황과 과제

근로복지공단 체제하에서는 의료시설이 독립법인화하면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이 각 병원단위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까지 근로복지공사 산하에서 재

활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산재 재활원은 곧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그 기능이 이관될 전망이다. 기존의 직업재활과에서는 직업재활 및 중도장애인의 작업·휴업 시설의 감독, 신체장애인 고용촉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산업재해 관련 재활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안산재활훈련원과 광주재활훈련원의 두 곳이다. 안산재활훈련원은 100명 수용규모이며 광주재활훈련원은 50명 수용규모이나 50명은 통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안산재활훈련원은 안산중앙병원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봉제공과와 인쇄공과의 2개 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재활훈련원은 1992년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현재 봉제공과와 광고미술공과의 2개 공과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작업훈련사업의 대상자는 산재로 인한 장해등급 3급 이상의 중도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입소자 부족시 장해등급 14급 이상자도 추가 입소시키고 있다.

훈련은 주로 생산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현장훈련을 위주로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입소일로 부터 2년이고, 기능자격 미취득자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입소자 대해서는 숙식 및 전기·수도, 건강진단 등에 대해 무료지원하는 것 외에 진료비의 혜택(의보수가의 30%)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본훈련수당으로 월 19-2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생산장려수당을 월 4만원 가량 지급하고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술수당으로 5만 5천원 - 6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산재장애인들은 후천적 장애인들이며 과거 정상인으로서 직업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선천적 장애인과는 달리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으로, 단순한 직업훈련만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재활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재활훈련원은 향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그 운영이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추가적인 입소자는 모집하지 않고 있다. 광주재활원은 1995년도에 이관될 예정이며, 안산재활훈련원은 이관을 고려 중에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992년 1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은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주로 선천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훈련으로서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기능사 양성 과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훈련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인정직업훈련원으로서 부식

비 보조 등으로 월 약 1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고 기숙사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다.
(이외의 직업훈련 실태는 부록의 표 2 참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광주재활훈련원을 이관 받을 경우 산재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을 통합하여 훈련시킬 계획이며 훈련과정도 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산재장애인들과 일반장애인들이 통합되어 훈련을 받게 될 경우 현재와 같이 산재장애인들만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 예컨대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정치 못하는 문제 등은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훈련교사 외에 훈련을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활용이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훈련기능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장애인훈련과 장애인고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산재 장애인들의 특수성이 간과되면서, 산재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혜택의 수준이 일반 장애인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산재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한 이상,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기업이 산재장애인의 훈련과 재취업에까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혜택의 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산재장애인대상 조사(1995)를 보면, 산재 장애인들중 현재 취업자는 36%에 불과하다. 산재 장애인의 다수가 실업자라는 사실은 그들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자의 32.5%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이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 직업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애인 고용의 문제인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2%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도 2% 고용율에 미달 - 이 고용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II. 나가며

산재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했다는 점에서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산업정규군으로서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다가 바로 그 생산활동이 원인이 되어 장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산업재해는 교통, 환경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의 장애발생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의해 장애인이 되었을 때에는 작업장에서의 노동과정 속에서 부상당한 것이므로 일종의 산업 유공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은 동시에 기업주의 이윤 증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는 일차적으로 산업재해의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상의 차원에서 그치면 안된다. 단지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서는 안된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8조 2항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와 당해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재취업의 내용을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까지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노동권의 확보 차원에서 직접 원인이 된 기업이 책임지고 지속적인 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용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일종의 권리로서 산재 장애인의 직업활동이 가능해질 경우, 이미 확보된 권리로서의 노동권은 일반 장애인에게까지도 확산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대상은 나아가서는 최근 3D업종에 주로 배치되면서 산업재해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산업연수생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을 넘어서 산재 발생이 예방되고,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혜택을 요구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서 산재 노동자가 참여주체로 나설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산재 보상보험 뿐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1) 가능한 한 국가 재정 지출이 억제되어 있어서 국가 지출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출이 되지 않고 있으며 (2) 운영과정에서 실제 주체인 기여자 및 수혜자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서 운영기구가 퇴물관료 및 장성의 일자리 제공체가 되어 있고 (3) 공공자금 관리 기금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일종의 목적세, 준조세 형태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사회적 기금이 경제논리에 따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재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도 만약 산재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의 관행을 답습할 가능성이 많다. 오직 주체적인 대응을 통해서만 최근 논의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심의 대처방안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산업체의 내역별 추이

구분	연도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제해자수(A)	80,570	113,375	141,809	142,088	142,596	142,329	134,127	132,873	128,169	105,330	90,288	
사망자수(B)	1,006	1,273	1,718	1,660	1,761	1,925	1,724	2,236	2,299	2,429	2,210	
B/A	1.25	1.12	1.21	1.17	1.23	1.35	1.29	1.68	1.79	2.31	2.45	
신체장애인(C)	6,490	14,873	19,824	21,923	25,244	26,239	25,576	27,813	29,854	33,569	29,932	
C/A	8.06	13.02	14.00	15.43	17.70	18.44	19.04	20.93	23.30	31.87	33.15	
직업병환자(D)	582	1,183	1,558	1,637	1,623	2,150	1,561	1,638	1,537	1,328	1,413	
D/A	0.722	1.043	1.098	1.152	1.138	1.510	1.164	1.232	1.199	1.261	1.565	
부상 및 질병자(E)	72,492	96,046	118,709	116,868	113,968	112,015	105,306	101,206	94,479	70,109	56,733	
E/A	90.0	84.7	83.7	82.3	79.9	78.7	78.5	76.2	73.7	66.6	62.8	

(단위: 명, %)

<표 2> 직업훈련의 실태

가. 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원

94년 총 24개 훈련원의 훈련인원 23,260명 중 장애인은 38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시설의 불편과 소외감 등으로 지원 장애인이 극소수인데도, 훈련교사들이 선발심사 과정에서 훈련성과 부진, 취업곤란 등을 들어 선발을 배제하고 있어 거의 유명무실 한 직업훈련원이 되고 있다.

나. 교육부 특수학교의 장애인 직업훈련

고교과정 특수학교 75개소의 연 배출인원은 1,200명 정도이다. 특수학교는 대부분 사립으로 재정 상태가 부실하여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극히 낙후되어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대부분 사양직종이다.

다. 보사부 장애인복지시설의 직업훈련

전국 152개 수용·재활시설에 총 13,533명 수용되어 직업재활과정--보호작업장 121개소, 근로시설 6개소--에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보호와 단순한 치료(물리, 작업)에 그치고 있어 직업훈련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라. 인정직업훈련원의 장애인 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원은 전국에 140개소가 있으나, 장애인 전문훈련원은 2개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삼육재활센터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은 3개 직종 1년과정, 정원 90명을 훈련하고 있으며, 수료인원의 50%정도가 2급기능사 자격취득 및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덕산인정직업훈련원은 정보처리 등 2개직종 2년과정 1급 또는 2급기능사 양성을 위해 정원 60명 훈련하지만, 교통불편, 공과단순, 고졸제한, 홍보부족 등으로 모집을 및 취업율이 다소 저조하다고 한다.

마. 근로복지공사 산재재활원

현재 산재재활원은 안산과 광주 두 곳에 있다. 안산재활원은 봉제·인쇄 등 47명을 훈련하고 있고, 광주재활원은 봉제·광고미술 42명을 훈련하고 있지만 정규직업훈련이 아닌 자립작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 장애인 전문훈련원

장애인 전문훈련원은 일산직업훈련원 1개뿐이며, 입학지원자는 91년 209명에서 94년 438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거주 장애인의 수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료: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사업계획 94~98 재구성〉

산재장애인의 실상과 직업재활

김학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산재장애인의 실상과 직업재활

김학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목차

-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변천과정과 산재원인을 바라본 정부의 시각
- 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비현실적인 보험급여
- III. 정부의 직업훈련원과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 현황을 살펴본다.
 1. 직업재활교육의 필요성
 2.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 IV. 결론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변천과정과 산재원인을 바라본 정부의 시각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는 500인이상 사업장의 제조업과 광업분야의 노동자들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정부기관에서는 선전활동을 하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영세 사업장(일명 마찌꼬바)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자본가는 선성장 후안전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논리를 앞세워 순박한 노동자들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진레이온 사업장에서는 504명이란 노동자가 집단으로 직업병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산재사망 증가와 엉터리 건

강검진은 조선노협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부에서는 계속해서,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노동자들의 70%이상이 본인의 부주의와 잘못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병원으로 향하고 요양신청서를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이 얼마나 재해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실대로 기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산재법이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피해가 적은 노동자들이 묵인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산재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64년이후부터 94년까지 정부측의 공식적인 발표만 그대로 믿는다 해도 30년동안 산업재해자수가 무려 28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신체장애를 입은 노동자의 수는 무려 4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직업병의 숫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2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에도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비현실적인 보험급여

먼저 산재보상보험법이 제정된 목적부터 살펴보자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많은 산재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재법에서 실시하는 보험급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보험급여 지출 예산의 84.7%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차례대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참고로 93년도 세출규모는 1조4백67억6천 6백만원에 수혜 노동자수는 14만3천4백1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보험급여가 8천7백25 억3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나머지는 산재예방 사업에 754억과 기금적립금 500 억원 그리고 재해노동자 복지증진 사업비가 84억원 순서였다.)

첫째, 요양급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부터 제기할까 한다. (참고로 93년도 지출금액 2천2백40억2천1백만원으로 전체 보험급여의 25.7%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재해를 당한 한OO 씨의 경우에서 살펴보자. 한씨는 88년과 92년 카스테레오 뚜껑을 찍어내는 프레스에서 일을하다 두번의 사고로 왼쪽엄지손가락만 남기고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옆손가락 중 하나 남은 손가락 만이라도 쓸수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의사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의술의 발달로 발가락을 잘라 손에 이식하는 수술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500 - 6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수술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속수무책 이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괜찮은 사장님 만난 덕에 수술비용은 해결할 수 있었고, 그후 합의 과정에서는 수술비용 만큼은 제외한다는 조건아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산재노동자 강OO 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강씨는 94년도 선반작업을 하던중 원손이 말려 들어가 절단되었고, 1차봉합수술을 받았으나, 골수염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재수술을 받으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는 비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술비용을 구하지 못한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 다니며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조에서는 ‘요양비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한 요양의 범위에도 신약과 고가약은 진료상 꼭 필요하거나,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막상 사용후 요양비를 청구하면 각 지사(지방사무소)에서 지급하지 않는 관계로 병원측에서는 산재환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례를 통하여 발견할수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요양범위, 둘째 공무원 사회의 적당주의, 세째 과다 진료로 인한 불신의 벽이다.

둘째, 휴업급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할까 한다. (참고로 93년 2천6백87억3천 6백만원으로 전체 보험급여의 30.8%에 해당하여 가장 많이 차지함)

현재 지급받고 있는 평균임금의 70%로는 최저생계에도 못미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또한 어떤 산재 노동자의 경우에는 치료받는 기간동안 일자리 좀 소개시켜 달라는 노동자분도 간간히 만날수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일은 대다수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란 점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집안 살림살이가 극도로 빙곤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측의 주장대로 ILO(국제노동기구)규정 보다는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손OO 아주머니의 경우를 통해서 휴양급여의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저임금 노동자인 손 아주머니는 하루 평균임금이 10,000원 정도로서 휴업급여 70% 을 수령할경우 한달에 겨우 210,000원 정도로 살아가야 하는 절박한 현실과 몇 분만에 끝나는 물리치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의사의 권위를 받아 수영장엘 다니며 반복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여곡절도 많았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휴업급여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 동안 생산의 주체로서 산업발전을 이룩한 산업재해노동자들에게 휴업급여 100% 지급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안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세째, 장해급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할까 한다. (참고로 장해급여는 93년도 지출금액 2천4백63억2천7백만원으로 전체 보험급여의 28.2%에 해당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해급여 제도는 특히 나이와 과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다친 산재노동자의 경우에는 치료후 장해정도가 심한데도,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 때문에 민사적 배상내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장해보상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자. 94년도 산재노동자의 경우 한손의 다섯손가락을 잃고서, 6급 판정을 받아 수령한 장해보상금이 고작 1천 3백만원 정도였다.(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금액이 전부이다.) 산재보험법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면 현실적인 보상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째, 비현실적인 장해보상금 실시로 민사배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민사를 가지 않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 몇푼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들었던 작업장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민사 배상 포기를 전제로 한 복직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합정이 도사리고 있다. 민사시효가 3년이란 점을 악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산재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장해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원직 복직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한다. 또한 직업전환에 필요한 중증의 산재장애인들에게는 사업주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직업재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우선적으로 직업재활센타는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III. 정부의 직업훈련원과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 현황을 살펴본다.

1. 직업재활교육의 필요성

현재 산재장애인들의 직업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도 장애인 특히 산업재해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주변에 있는 산재 장애인들의 삶을 살펴보자.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산재 장애인들은 우유 배달과 신문배달 그리고 세차장의 잡부 등 그 밖에 모집공고를 보고서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접수시키지만 거의 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어렵게 직장을 갖게되면 직업교육의 불충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된다.

2.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기술 습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안산에서의 인쇄기술과 봉제기술, 광주에서의 토탈광고(일명 간판가게)기술과 봉제기술이 전부이며, 인천 산업재활원에서는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1973년부터 7개과(목공예 공과, 귀금속공과, 인장공예공과, 시계공과, 원예공과, 전자공과, 표구공예공과 등)에서 2개월 과정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모두 합한다고 해도 몇 백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수용인원에도 있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양산업의 직종이란 점에서 그 누구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만히 그 이

유를 살펴보면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직종에서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업종에서의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기술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교육기간 동안의 생계보조금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휴업급여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한 1995년 산업재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내용을 요약하면, 산재장애인중 현재 취업중인 사람들은 36.0%에 그치고 있으며, 미취업중인 산재 장애인이 64.0%에 이른다. 그리고 이중 90.8%가 취업을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미 취업상태에 있는 주 원인으로는 장애 때문이라기 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회사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취업을 원하나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들중 46.9%는 직업훈련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주목 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수준을 실질적인 급여수준으로 개선하자.
세째. 산재 장애인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직업재활센타가 절실하다.

IV. 결론

현재 정부측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64년이후 신체장애인 수가 40만명에 이르며, 1급부터 9급까지의 신체장애인이 11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는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장애자 수첩을 발급받아야 할 숫자이며, 아울러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숫자이다. 또한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산재장애인을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는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니,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지원한다느니 하는 원색적이고 생색내기식 언론 플레이와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진정으로 기층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계 사회복지 수준이 122위이고 직업재활센타 하나없는 상태를 고려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엘리베이트 앞에 불어 있는 '산재는 0으로, 복지는 100으로'라는 말들은 전시행정이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얹켜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다.

-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을 더욱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자.

전체장애인 문제속에서의 산재장애인의 문제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전체 장애인 문제 속에서의 산재 장애인 문제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목차

- I. 서론
- II. 장애인취업의 문제
 1. 장애인의 노동형태
 2.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직업재활훈련
- III. 대안
 1. 직업재활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2.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이 전체장애인에 주는 의미
 3. 기업, 정부, 노동자의 책임

I. 서론

장애인의 수는 장애인의 개념을 어느 범위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추산될 수 있다. 단지 정신적, 신체적 손상장애인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는 199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수를 95만6천명정도로 보고 있으나²⁾, 보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간주된다. 더구나 내부장애나 왜소증, 알콜중독 같은 UN 등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의 정의를 채택할 경우 전 인구의 10% 혹은 그 이상으로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 중 산업재해장애인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건 사회연구원의 9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의 약 10% 정도(다른 유형의

2) 이 조사 결과 장애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경우는 발생률이 매우 낮다)가 자신의 장애원인을 산재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산재보험법에 의해 신체장애인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40만명이 넘어서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관행이 된 공상처리자, 산재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등에서의 발생자까지 포함한다면 산재로 인한 장애발생은 엄청난 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장애인구중 그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인구의 10%이상이 되는 장애인의 문제는 현상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³,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동반하지 않으면 사회적 교류는 커녕 집 밖으로 나오기 조차 힘든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2만명정도의 장애인의 인권(수용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장애인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영양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부당한 작업까지 해야만 한다)의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더하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의료보장,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해주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공적부조체계는 장애인과 그의 가족 대다수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방치하고, 심화시킨다.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산재장애인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한다. 전체장애인의 30%정도가 20세이전 장애인이 되는 것에 반해 산재장애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 거의 발생한다는 점과, 전체장애인의 경우 무학이나 국민학교졸업이 60%에 이를 정도로 교육기회

〈표 1〉 장애종류별 출현율 및 주점장애인수

구분	재가장애인추정치	시설장애인	전국장애인추정치	출현율(1/1000명)
지체장애	541,874	6,530	548,404	12.67
시각장애	221,636	1,517	223,153	5.16
청각장애	170,434	1,712	172,146	3.98
언어장애	112,670	3,132	115,802	2.68
정신지체	74,418	9,982	84,400	1.95
계간(spell)	1,121,032	22,873	1,143,905	-
인(person)	937,224	18,820	956,044	22.10

3) 90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재가장애인중 무학자는 29.1%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학교 졸업자가 30.9%, 중학교 졸업자는 15.6%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낮은 교육 수혜율을 보이고 있다(장애인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1992, p.21)

한편 특수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비 예산 중 0.4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특수아동 중에서 자기의 능력에 맞는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4만8천2백7십6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13.8%에 불과하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는 다니고 있으나 자신들의 욕구에 부응한 제대로 된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외의 대다수 장애아동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가정의 올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받을 장애인의 수에 비하여 특수교육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원 수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운영위원회 활동자료집, 1994).

가 제한되고 있는데 비해 산재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 속에서 살아간다. 오히려 중도장애인의 경험하는 문제인 스스로의 장애에 대한 수용과 적응이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첨가될 뿐이다. 특히 다른 문제보다도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자신이 일하고 있던 직장으로부터 능력과 무관하게 내몰리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개인적 무력감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산재로 인한 장애인이든, 다른 원인에 의한 장애인이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많은 제약에 맞부딪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빈곤과 장애는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영양부족,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 빈곤한 가정의 아동일수록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고, 성인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생산적 육체 노동자일수록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이들은 장애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 장애가 심화되며, 간신히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치료비는 가족의 경제를 더욱 빈곤으로 이끌고 가는 부담이 된다. 가난한 가정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나 사회적 교류, 취업을 위한 준비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또다시 악순환된다.

이렇듯 삶 전반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 장애인 문제중 어느 하나가 먼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제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취업문제를 장애인문제해결의 주요고리로 보고 그 실태를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의 노동형태와 현재 제공되는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장애인 일반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취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직업재활훈련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또한 산재장애인의 재취업권리 확보가 전체장애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논해보고,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직은 시론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장애인 취업의 문제

장애의 발생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4가 자본의 과욕과 국가정책의 부재로 발생한다는 것을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기형 아 출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 국가 방역체계의 미비로 인한 전염병의 발생 등은 어느 한 개인의 조심으로 방지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또한 전쟁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발생한 충북 우암상가아파트에서의 가스폭발, 기차전복, 비행기 추락등에서부터 얼마전의 삼풍백화점 붕괴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사고는 결코 돌발적이거나 우연적이 아닌 이미 사회 구석 구석에 그 씨앗이 잉태되어 만들어 지는 것이다⁵⁾.

이렇듯 장애의 발생은 그 어느 하나 사회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생존권의 확보는 장애인 개인만의 문제인 듯이 취급된다. 장애인의 취업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요인들이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막고 있다. 그 요인을 장애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기업주의 편견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논리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생산적 능력의 활용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실업자의 확대로 노동자의 권리 제약, 빈곤선의 하향조정으로 임금동결) 등에 의해 장애인 취업은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산의 영역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복지비용의 축소를 위해서라도 진행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우리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장애인의 취업의 제약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제약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 특히 직업재활훈련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장애인의 노동형태

장애인의 노동 형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체인구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 1990년 비경제활동인구이 차지하는

4) 1993년 한해만 해도 260,9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0,402명이 사망하고 337,679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체 장애인중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전체장애인중 10%이상이 되는 것을 비롯하여 전체장애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5) 삼풍백화점 붕괴에 의한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의 총 수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삼풍 이전까지 이들 사고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약 684명, 총 부상자 수는 약 1,000명에 이르고 있다.

<표 2>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총계	15세이상(생산가능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소계	비경제 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율)			
'90 전체인구 ¹⁾	42,869 (100%)	18,036 (45.2%)	451(2.4%)	18,487 (43.1%)	12,314 (28.7%) 30,801 (71.8%)
'90 장애인구 ²⁾	956 (100%)	293 (30.8%)	142(32.7%)	435 (45.6%)	444 (46.5%) 880 (92.1%)

주: 1. 통계청(1990).

2. 노동부(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의 자료 재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인구에서는 28.7%인데 비하여 장애인구에서는 46.5%(1990년)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가사(비경제활동인구의 50%)와 학생(35%)으로 구성되는데 반하여 장애인구에 있어서는 그 절반 정도가 장애를 이유로 하고 있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중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 노동이 힘든 장애인들이 이미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졌으므로 실업률은 노동가능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전체 2%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32.7%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인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업률 계산이 최소한의 무직자만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셋째, 1990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435,796명중 293,338명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구조별로 보면 1차산업의 경우에는 33.1%로 종사율이 높고 2차 산업 종사율은 상당히 낮아 전체 산업구조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의 지위에서 보면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자영업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으나, 어느정도의 기초자본이 요구되므로 실제로는 영세하고 주변화되어 있는 형태의 자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장애인은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나 사무·관리종사자 등이 매우 적은 반면, 생산·운전·운수·장비 단순노무자와 농림 수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장애인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에 종사하기 힘든 것은 교육의 제한과 밀접히 연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고용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있는 장애인은 11,305명으로 장애 피고용자 125,288명의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체노동자는 17.1%). 장애인 취업인구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그 중 3,000명 정도의 장애인은 120여 곳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이들의 노동조건을 임금의 정도로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장애인들이 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이들도 전체취업자의 임금분포에서 본다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92년도 2/4분기 한국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 814,000과 비교해 볼 때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는 80만원 이상이 38.3%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61.7%의 장애인 노동자는 전체의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20만원 미만자가 0.4%로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지만, 전체 일반인구와 비교해 볼 때는 낮은 지위의 단순 노동을 하고 있어 비공식부문의 취업만큼이나 불안정한 고용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의 차가 장애인의 임금을 차별화시키고 있으며, 동일 규모의 기업내에서도 장애인들은 비장애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차등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군다나 보호작업장의 임금은 10만원 미만이 4.7%나 되고 있으며, 92년 당시 최저생계비인 22만 2천원 이상 임금을 받는 이들이 14.4%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져 그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준다. 그나마도 월별변동이 매우 심하게 지급된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2).

2.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직업재활훈련

가.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으로는 취업이나 교육의 제한 외에도 의료불충분, 이동의 제약, 정보의 부재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든 수 많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미미하다.

장애인에 있어서의 공적부조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12만명 정도의 장애인에 한

해서만 지급이 되고, 그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잡화상식으로 나열되어 이름만 많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거의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이들 장애인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을 뿐--물론 실제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이들 중에서도 한정되어 있다--이다. 95년의 경우만해도 장애인복지예산은 617억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시설지원으로 할애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체이다.

공적부조나 사회보험의 실내용이 빈약하고 취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경제적 빈곤을 모면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실태조사중 서울만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미만의 수입자가 13.6%로 가장 많았고, 70-100만원이 13.3%, 30-40만원이 12.6%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총수입이 92년 현재 233만5천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50% 이상이 60만원 미만의 수입을 보이는 것은 장애인 가구의 상당수가 빈곤층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소비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출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 장애인가구의 빈곤함을 보여준다. 더욱기 약 12만가량의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은 정부의 지원금에 좌우되고 있어 수입이 10~2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산재장애인 역시 경제생활은 상당히 어렵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더욱기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취업이나 생활의 제약에 산재장애인도 동일하게 노출되므로 경제적인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공단의 조사에서도 응답한 산재장애인의 32.5%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나서 산재장애인들의 경제상황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 직업재활훈련

장애인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장애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의 취업의 통로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로 존재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전체 노동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고 있지만 그 역시 장애인 취업이라는 실효과는 얻고 있지 못하다. 91년 제도 시행 당시 7,758명이었던 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 노동자가 94년 12월 말 현재 9,097명으로 실제로 추가고용

된 장애인은 1,000명을 조금 넘고 있을 뿐이다⁶⁾.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 현실에서는 2%가 아니라 1%에 이르는 것도 요원할 것이다.

사업주는 '취업할 정도의 능력있는 장애인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논리는 정책 차원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타파될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업환경의 미비(편의시설 등)라든가, 직종개발에 있어서의 안일(목공, 인쇄 등 몇가지 직종에 한정하여 취업할 수 있다는 사고), 실질적 직업훈련결여 등의 직업재활 전 과정의 불충분성이 해소된다면, 사업주가 더이상 능력이라는 평계를 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은 양의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전국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잘 것 없다. 직업훈련보다는 교육이나 노동이 주가되는 특수학교나 복지시설을 제외한다면 장애인은 연간 고작 몇백명만이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적성평가 등이 무색하리만치 몇 안되는 사양직종

6)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출처 :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정책과, 1995)

<표 3>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 개소, 명, %)

사업체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고용의무 미달인원
2,141	2,092,005	40,585	9,097(0.43)	31,488

주) 장애유형별 : 지체장애 7,408, 청각언어 1,185, 시각장애 379, 정신지체 125

<표 4> 정부부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94)

(단위 : 명, %)

기관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고용의무 미달인원
44	162,451	3,230	1,049(0.65)	2,181

<표 5> 장애인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기관별	적용대상 공무원정원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현원(고용률)	고용의무 미달인원
계	280,887	5,580	2,181(0.78)	3,399
법무부	1,198	23	5(0.43)	18
사법부	8,376	167	48(0.57)	119
행정부	269,362	5,351	2,125(0.79)	3,226
기타헌법기관	1,961	39	3(0.15)	36

만으로 이루어진 훈련인 것이다.

산재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위한 별도의 시설로는 안산재활원, 광주재활원 외에 안산자립작업장, 재활병원과 연결된 산업체재활원 등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취업의 실효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대안

1. 직업재활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현재의 직업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취업의 가능성을 확대해주지 못한다. 이를 극복해 보고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97년을 목표로 재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고 (부록 참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의 재활공학연구센터를 이용해 95년 말까지 직업재활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지만, 양자 모두 실질적인 운용계획없이 거액을 낭비하고 있다는 등 그에 따른 문제지적과 의심의 목소리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장애인,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등의 건립은 분명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건립될 센터는 장애인의 직업평가, 훈련, 고용형태, 직종 등을 다각적으로 포함하는 체계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중앙집중보다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직업훈련원을 이용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색내기가 아니라 내용을 갖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운용에 있어 산재노동자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문 상에만 포함되는 당사자의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스스로 관리·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이 전체장애인에 주는 의미

이상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충은 다른 장애인보다는 산재장애인에게 우선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취업에 있어 산재장애인의 다른 장애인들과는 차별을 갖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산재장애인의 발생원인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그 책임주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즉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기업주가 책임져야만 하는 사안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산재장애인의 이미 고용구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발생이후에는 여타의 장애인들과 동일한 정도로 취업구조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것은 산재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분명한 권리로 주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해연금만이 보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8조 2항에 명시된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와 당해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재취업의 내용을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까지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최대한 같은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득이 같은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그 방안의 모색은 사업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받는 기간동안의 생활 보장은 필수적인 것이며, 앞서 논의된 것처럼 실질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장애인의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의 요양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 환경의 문제와 함께 장애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장애인이 된 이들의 문제는 장애인구의 양적 확대의 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장애인 속에서 산업재해장애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부각의 의미는 그 수의 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재장애인노동자는 그 존재형태에서 노동자라는 계급적 위치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 장애를 입게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장애인노동권 문제에 새로운 가능성은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이는 산업재해장애인노동자가 여타 장애인과 달리 장애발생책임의 주체가 분명하여, 이미 갖고 있던 노동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분명한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산재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산재장애인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이미 갖고 있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고용의 문 밖에서 출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장애의 발생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 산재장애인노동자의 노동의 권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산재장애인의 확보한 노동의 권리는

전체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3. 기업, 정부, 노동자의 책임

산재장애인노동자의 재취업 권리의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업과 정부가 이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다. 노동자는 보상연금만 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의 부분도 권리로 인식하여 직업훈련, 요양 등 장애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조건을 최대한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노력은 각 단위 사업장의 노조를 통하여, 민주노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위사업장의 노동자와 노동자들의 한 목소리를 대변할 민주노총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연민이나 인권의 문제에서 보다는 산재장애인, 장애인의 노동권확보라는 나의 문제, 나의 동료의 문제에서 시작할 때만이 힘있는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산재장애인노동자문제와 사회보장에 대하여

윤우현(전국민주노조총연맹준비위 집행위원)

산재장애인노동자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하여

윤우현(전국민주노조총연맹준비위 집행위원)

산재왕국! 사회보장 세계 122위, 이것만큼 한국노동자의 상태를 생생하게 응변해주는 지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일반 더 나아가 산재장애 노동자의 삶의 질과 권리가 얼마나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재해노동자의 재활과 권리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에는 재해노동자에게 적정 의료 및 직업재활 등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제28조 2항). 이에 따른 산재보험시설로는 일반요양시설(6개소, 1530개 병상), 진폐전문요양시설(2개소, 470개 병상), 요, 휴양시설(1개소, 150병상) 등이 있고, 재활시설로는 재활원(1개소, 300개 병상, 5개공과), 병원(1개소 2개공과), 훈련원(2개소, 100명입소, 2개공과), 작업장(1개소, 입소정원 50명, 2개공과) 등이 있다. 직업재활훈련사업은 1992년 2개의 훈련시설에서 482명을 대상으로 시계수리, 원예, 인장, 공예, 귀금속공예, 전자공과 등의 훈련이 실시되었다. 산업재활원의 경우, 1980년에는 10개공과 훈련자가 932명이었으나 1992년 현재 5개공과 40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치료후 작업훈련도 1992년 현재 1개 재활훈련원에 85명 입소자만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경우 월 평균 소득도 195,585원에 불과했다. 복지사업도 자녀장학사업과 생활정착금대부사업(장해 등급 1-7급만) 등이 있는데, 그 실적 또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장애인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가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외면해 다시피 하고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다가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인이 된 경우, 산재보상보험에 의한 보상금과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업주의 위로금이 향후 생활보장의 전부이다. 이러한 보상의 수준은 주로 재해를 당한 당사자 개인에 대한 향후 생활의 극히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치료가 끝나는 때까지 휴업보상을 제공하는 정도일 뿐이다. 이로 인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산재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요양기간중의 생계문제, 사회생활, 실업문제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대부분 기존의 직장에서 다시 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종결후 취업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해당사자가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을 받고자 해도 시설의 부족과 적합한 직종의 문제 등으로 근본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재 근로복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해노동자 재활사업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수요에 따른 균형있는 분포가 되지 않고 있다. 둘째, 취업으로의 연결이 가능한 실효성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미흡하다. 셋째, 재취업이 보장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째, 신체적 장해와 더불어 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족관계, 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사업장 차원에서부터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재활에 대한 기회와 권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산재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적합한 직종개발, 취업알선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단체협약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교육휴가제도를 확보하여 일반노동자뿐만 아니라 산재장애인노동자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준수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고, 해당사업장의 산재장애인의

경우는 의무비율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노조의 '산업안전부'활동에 산재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체노동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공동대응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 각계각층간의 지속적인 연대활동이 필수적이다. 해당 노조가 주축이 되어 그러한 활동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특히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를 계기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등 모든 부문이 산재장애인에게도 개방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야 한다. 향후 갈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차별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현재 그러한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다. 설사 제도적으로 사회보장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차별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2차 노동시장에의 취업기회만 확대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으로 볼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어떤 다른 집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사투쟁'없이 사회보장은 없다. 일회적인 행사방식이 아닌 끈질기고 집요한 투쟁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해투'와 같은 해당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투쟁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의 '삼풍붕괴'를 비롯한 대형안전사고들이 산재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을 계기로 국민대중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형락(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형락(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장)

목차

- I.근로복지공단 출현의 배경
- II.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III.장애인의 실태 및 고용
- IV.산재보상제도와 산재근로자 보호
- V.산재보험제도에서의 공단의 위치
- VI.산재보험제도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 VII.결론

I. 근로복지공단 출현의 배경

- 최근 정부조직의 국영기업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지난 64년 출범 이후 정부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온 산재보험을 공단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음.

- 이러한 배경하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전신인 근로복지공사에서는 산재보험시설의 운영주체로서 산재보험을 인수, 산재보험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선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 왔음.

-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산재보험의

공단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결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금년 5월1일 근로복지공단이 정식 출범하게 되었음.

- 5월1일 공단 출범후 우리는 산재보험의 조기정착과 보험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

II.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 94년말 현재 산재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 172,871개소, 734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 연간 보험급여 총액은 9,986억원, 재해자수는 85,948명이었음.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 37.5%, 제조업에 34.2%, 광업에 13.0%, 운수통신에 7.6%, 기타산업에 7.4% 전기가스에 0.3%가 지급되었으며, 1인당 보험급여는 광업, 전기ガ스, 건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1> 업종별 산재보상현황

	재해자수(명)	보험급여총액(백만원)	재해자1인당보험급여(천원)
전산업	85,948	998,563(100.0)	1,162
광업	2,689	129,438(13.0)	48,136
제조업	40,037	341,963(34.2)	8,541
건설업	24,271	374,230(37.5)	15,419
전기ガ스	132	3,031(0.3)	22,962
운수통신	9,357	75,615(7.6)	8,081
기타	9,462	74,286(7.4)	7,851

- 보험급여 종류별로 보면 휴업급여에 30.4%, 장해급여에 26.9%, 요양급여에 25.0%, 유족급여에 14.3%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전체적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연금급여의 비

중이 커지는 반면 요양급여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2> 급여종류별 지급현황(1994년)

(단위 : 백만원, %)

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연금	장의비
998,563 (100.0)	249,186 (25.0)	303,595 (30.4)	268,148 (26.9)	143,768 (14.3)	20,561 (2.1)	13,305 (1.3)

2. 과제

(1) 적용사업장 확대

- 현재 ① 5인미만 사업장 ②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④ 선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⑤ 건설공사 중 총공사대금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자 ⑥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고 있음

- 96년부터 부동산 임대 및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에 대한 적용 확대(사업장 6,275개, 근로자 32만2천) 문제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문제는 노동부에서 검토중임.

- 공단은 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누락 및 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임. 영세사업장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한 공단의 서비스(예: 전화가입 등)도 공단의 보험업무 정착과 함께 강화할 예정임. 또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이용이 본격화되면 사업장의 생성 및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적용누락사업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2) 보험급여

- 산재보상은 피해근로자의 재해발생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율보상방식에 의

하며, 연령, 직종, 근로기간 등의 제반조건은 고려대상이 아님.

- 평균임금은 근기법 제19조에 의해 산출하는 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핵심과제중 하나는 산재보상이 민사배상 수준보다 낮다는 것임.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 이후 민사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놓고 있고 사업주에게는 이중부담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은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바,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노동력상실도에 따른 경제적 보상에 국한하며, 정율보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민사배상은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며, 과실상계를 하고 있음.

- 산재보상과 민사배상과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점이 검토되어야 하나 먼저 공적보험제도는 최고보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하는 최적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민사배상까지 포함할 경우 특정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정율보상방식이 아닌 연령, 과실책임을 등을 고려하는 산재보상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등 산재보상제도에 본질적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임.

- 이외에 공단은 연금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평균임금자동개정, 연금자동지급 등을 추진하는 등 현행법내에서 가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3)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금년 5월1일부터 산재보험급여의 원처분에 대한 심사는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

단에 제기하며, 재심사는 종전과 같이 노동부에 제기함.

- 공단은 소관업무인 심사제도를 신속·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의 능력제고, 심사대상의 유형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III. 장애인의 실태 및 고용

- 1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0.5%이나 장애인은 48.8%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이 전체보다 11.7%p 낮아 장애인의 경제활동 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의 비율을 보면 전체인구가 2.1%에 불과하여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우나 장애인은 32.6%나 되어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 정상인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아 피용자로서 취업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중 피용자 비율이 28.8%에 불과한 것은 장애인의 취업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못함을 알수 있음.

<표3> 총인구 및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총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계	경제활동인구					
			소계	피용자	자영자	실업자		
총인구 (천명)	44,851	33,196	20,088 (100.0) (60.5)	11,929 (59.4) (35.9)	7,731 (38.5) (23.3)	428 (2.1) (1.3)	13,108 (39.5)	
장애인 (명)	956,044	880,175	429,113 (100.0) (48.8)	123,492 (28.8) (14.0)	165,673 (38.6) (18.9)	139,948 (32.6) (15.9)	451,062 (51.2)	

주 : 총인구는 94년말 통계이며, 장애인은 90년 보사연 통계임.

- 장애인 등 한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신체기능회복 및 잔존 노동력 개발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치료종결단계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적응훈련을,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재활작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국고보조가 불안정하며, 훈련이수후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한편 '94. 3 정부의 [노동행정 기능개편지침]에 의거, 기존 근로복지공사의 산재장해근로자 직업재활훈련기능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95. 6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어 직업재활훈련원의 기존 훈련프로그램을 중증 산재장해자에 대한 직업재활시스템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우리 공단 산하 산재의료관리원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작업 위주의 기존 훈련체제를 지양하고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활원의 인정직업 훈련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직업알선기능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재정립하여 치료, 의료재활,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연계체계를 강화하며 사회발전 추세에 알맞는 훈련공과를 개설하고 시설투자 확대해 나갈 예정임.

IV. 산재보상제도와 산재근로자 보호

- 사회보장방식은 기본적으로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사회보험방식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부담 저복지의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수급자는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제도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임.

-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경우 연금이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이며, 의료

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의료비 약 64%만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경우 기초 임금의 50%만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임.

-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보험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 집단적인 가입과 사용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사회보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노력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산재의 경우도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① 임금변동순응률 제도 ② 보험급여의 최저보장제도(휴업급여 제외) ③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장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갖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재해 판정, 보험급여 지급 및 심사의 신속화를 위해 관련제도의 정비 및 업무전산화를 조기 완성할 예정임.

V. 산재보험제도에서의 공단의 위치

- 주지하듯이 정부출연기관은 정부의 정책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보험업무 및 근로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임.

- 공단은 산재보험서비스의 전달자로서 그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달과정의 신속·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할 것임. 또한 이같은 보험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파악되는 정책개선사항을 관련정부부처에 전달함으로써 제도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VI. 산재보험제도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 현재 산재보험관장기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협의회,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자문의, 진폐심사협의회, 진료비심사지도협의회, 치료종결심의협의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공단 이사회가 있음. 이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노동부에 설치된 것이며, 여타 기구는 공단본부 또는 공단의 지역조직에 설치된 것임.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경우 노사공익의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고 있고,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도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 문제는 제도운영에 달려 있는 것임.

- 공단에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미 근로자대표가 사용자대표와 동수로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업무 집행에 중복을 초래하여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단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심의회 등은 모두 의학적 자문을 얻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배제한 중립적 전문기구임.

- 그러나 앞으로 공단은 공단운영에 있어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임.

VII. 결론

- 공단은 산재보험서비스의 전달자로서 근로복지증진의 담당자로서 법제도에서 부여된 역할은 물론 제도개혁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다할 예정임.

- 다만 제도 출범후 2달 19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업무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업무정착후 업무수행을 통해 측적되는 경험을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충분히 활용토록 할 것임.

- 또한 공단은 정부출연기관이 가지는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직무평가제도의 도입,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같은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는 공단 자체의 노력은 물론 근로자를 비롯한 관련당사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오늘 이러한 모임에 과거와 달리 공단이 참여에 주저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산재보상제도에 관심있는 많은 조직과 전문가와 대화해 나갈 것임.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94~'98)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94~'98>

1994.6. 노동부 직업안정국

I. 추진경위

- '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인식부족, 사업주들의 고용기피 등으로 실제 고용증가는 미미한 반면
 - 미고용 사업주로부터 정수한 부담금을 기초한 기금은 상당량 적립되고 있으며
 - 기금을 활용한 고용촉진사업도 활발히 추진치 못하였음
- 따라서 관련학계, 관계부처, 재활기관, 공단 전문가들로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기획단을 편성, 지금까지의 제도 및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향후 4~5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특히 특수교육기관의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재활시설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연성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II. 기금운용현황 및 성과분석

1.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가. 주요재원

▣부담금: '91년부터 의무고용제 실시에 따라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로부터 부담금
징수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2%고용의무

-의무고용미달시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이상 부담금 납부의무 부여

▣정부출연금: 정부는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의 제공 책임

-공단 운용요원의 인건비, 장애인 직업훈련 경비의 일부 부담

-기금 재정상태를 고려 7~10억원 출연

나.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계	'90	'91	'92	'93
총조성금		758.3	10.0	14.1	259.3	474.9
부담금 수입		645	-	-	220	425
정부출연금		58.2	10	12.9	26.3	9
운용수입		55.1	-	1.2	13	40.9

다. 연도별 운용내역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계	'90	'91	'92	'93
계		173.2	10.0	12.9	49.1	101.2
■장애인직업훈련사업		48.3	0.2	0.9	21.4	25.8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용자사업		19.3	-	-	7.1	12.2
■공단사업		105.6	9.8	12.0	20.6	63.2
-고용지도 및 연구		13.6	0.3	1.0	6.0	6.3
-공단운영비		57.1	4.5	10.0	9.9	32.7
-사무실 임차료		34.9	5.0	1.0	4.7	24.2

라. 기금적립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계	'90	'91	'92	'93
■수입		758.3	10.0	14.1	259.3	474.9
■지출		173.2	10.0	12.9	49.1	101.2
■기금적립액		585.1	-	1.2	210.2	373.7

2. 고용촉진사업 성과분석

■의무고용제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 일반국민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생산성 저하우려, 추가적인 노무관리부담, 시설투자 소요등으로 고용을 기피하여 취업증가는 극히 미미하였음

-'90년말 7,758명에서, '93년말 8,843명으로 1,085명 증가

-고용의무인원 3만 9천명의 22.3%수준

■제도 시행초기 부담금을 부과하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고용기보다는 부담금납부를 선호하여 '92, '93년간 총 645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되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활용한 것은 170여억원임

■기 집행된 172억원도 공단운영경비 57억원, 건물임차료35억원, 장애인직업훈련35억원,

인정직업훈련원 훈련보조에 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의무기업의 초과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6.7억원, 비의무기업에 대한 장려금 1.9억원, 시설개선용자 13.7억원에 그쳤음

■한편 장애인고용 시설개선을 위한 유·무상지원을 연간 200억원정도 계획하였으나 인센티브적 기능이 미약하여 기업이 적극 활용치 않아 불용 이월되었던 바, '93년말 기금적립은 총 580억원에 이르렀음

III. 고용촉진사업 추진계획

1. 기금징수 전망 분석 추계

구분	연도	'94	'95	'96	'97	'98	총계
수입	계	1,126	550	495	459	425.9	3,055.9
	이월	585					585
	용자금회수	-	-	-	4	8.9	12.9
	부담금	475	508	453	428	392	2,256
	이자수입	59	32	32	17	15	155
	정부출연	7	10	10	10	10	47
지출	계	452.4	537.1	719.6	581.8	493.5	2,784.4 (100%)
	장애인직업훈련	150.4	194.3	306.1	222.2	121.5	994.5 (35.7)
	장애인고용 촉진사업	146.3	131.4	173.7	129.0	120.2	700.6 (25.2)
	장애인고용사업 주지원사업	97.0	102.5	113.3	96.1	103.0	511.9 (18.4)
	공단운영	58.7	108.9	126.5	134.5	148.8	577.4 (20.7)
	기금잔액						271.5

2. 사업추진 기본방침

■ 현단계에는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취업이 가능하고 사

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최우선

■ 사업시행초기임을 감안, 기금의 적립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기반을 조성하고, 고용기업 및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선정 시행

■ 기간중 부담금 수입 등을 고려, 예산 가용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관계부처 소관과 관계없이 투자효과가 빠른 사업을 선정, 우선적으로 집행

■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이 원하는 제도를 개발·지원하고, 관주도 사업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사업집행의 과감한 공단 이양, 절차의 간소화등을 통한 활성화 도모

■ 중증장애인은 보조금 고용제, 2배수 고용인정제, 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유인책을 강구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

3. 주요사업 및 예산 총괄

▣ 연도별 주요사업

연도	주요사업명		
	직업훈련사업	사업주·장애인지원사업	공단사업
'9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정직업훈련원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산·대전훈련원부지매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원·장려금 인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근차량구입 응자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흥보드라마 제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상담소 운영 (7개 사무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직업재활센터부지구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기능경진대회
'9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력관리공단 훈련원지원 (매년 6개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수학교지원(8개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산·대전훈련원 건축 · 인정직업훈련원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증장애인2배수고용인정 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고용보조금 지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활시설 연계고용제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정장애인 유보직증확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홍보지 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방사무소 증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통계조사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고용전산망 운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직업재활센터건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96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수학교지원(8개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재활원 인수 (안산·광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산·대전훈련원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흥보탑·현판등 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방장애인 기능경진대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공단요 원 배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범사업장 설치 (1개소)
'97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수학교지원(2개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재활원 개축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개원(일 부)
'98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수학교지원(2개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주·안산훈련원개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훈련원운용 및 지원계속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범사업장 설치 (1개소)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94		'95	'96	'97	'98
		기계획	추가				
I. 장애인직업훈련사업	994.5	20.0	130.4	194.3	306.1	222.2	121.5
<인력관리공단>							
1. 인력관리공단 훈련지원	63.6	-	-	11.5	17.7	19.7	14.7
<관련기관>							
2. 특수학교 훈련지원	89.6	-	-	28.0	28.0	16.8	16.8
3. 장애인복지시설훈련지원	77.4	-	2.3	6.4	23.6	25.1	20.0
4. 인정직업훈련원훈련지원	45.8	3.3	2.5	10.0	10.0	10.0	10.0
<공단직업훈련>							
5. 산재재활원 인수·개축	151.1	-	-	1.5	59.0	90.6	-
6. 전문훈련원 증설·운영 (2개원)	440.8	-	125.1	87.9	147.8	40.0	40.0
7. 일산훈련원 운영	97.2	16.7	0.5	20.0	20.0	20.0	20.0
8. 일산훈련원 증축	29.0	-	-	29.0	-	-	-
II. 장애인고용촉진사업	700.6	38.0	108.3	131.4	173.7	129.0	120.2
1. 취업알선 서비스 사업	142.6	13.0	8.3	39.5	26.6	29.7	25.5
2. 직업재활센터 건립	261.5	-	100.0	50.0	56.9	54.6	-
3. 장애인고용 시범사업장건립 · 운영	100.0	-	-	-	50.0	-	50.0
4. 기능경진대회(국내,국제)	51.5	-	-	11.9	10.2	14.7	14.7
5. 장애인근로자 통근차량용자	145.0	25.0	-	30.0	30.0	30.0	30.0
III.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511.9	97.0	-	102.5	113.3	96.1	103.0
1. 초과고용사업주에 대한 지 원·장려금	99.0	12.0	-	15.0	20.0	24.0	28.0
2. 중증장애인 고용보조금	21.9	-	-	1.9	4.4	6.8	8.8
3.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76.0	10.0	-	25.6	28.9	5.3	6.2
4. 고용사업주 시설개선 무상지원	105.0	25.0	-	20.0	20.0	20.0	20.0
5. 고용사업주 시설개선용자	210.0	50.0	-	40.0	40.0	40.0	40.0
IV.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운영	577.4	58.7	-	108.9	126.5	134.5	148.8
1. 공단본부 운영비	305.4	30.4	-	56.0	62.9	70.9	85.2
2. 지방사무소 운영	272.0	28.3	-	52.9	63.6	63.6	63.6

4. 분야별 사업추진계획

I.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 직업훈련 기본방향

▣ 기존 직업훈련시설을 최대한 이용 직업훈련 실시

- 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을 시설 개선하여 가능한 많은 장애인이 종합훈련도록 적극주도

- 특수학교 직업훈련과정을 적극 지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직업훈련 내실화

- 장애인 복지시설의 훈련장비·훈련교사 등을 지원 훈련 내실화

- 인정직업훈련원에 장애인 특설반을 운영·지원

▣ 산재재활원 2개소를 인수, 기능종합·정규훈련원으로 개원

▣ 지방주거 장애인을 위하여 주요지역에 장애별 특화된 직업훈련원을 년차적으로 증설

▣ 기존·신설 훈련원에 중·고령장애인, 중도장애인 전직훈련등을 위한 단기과정 병설
· 운용

▣ 공단 또는 인력관리공단에서 전문교사를 육성 배치, 보조교육 실시

▣ 재활단체 등에서 인정직업훈련원 설립시 훈련장비·훈련비 등 지원

▣ 기업이 사업내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수당, 훈련비 등 전액 지원

I -1. 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원의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인력관리공단 훈련원 모집인원의 30%이내에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되어 있으나 지원 장애인이 극소수

▣ 훈련교사들이 선발조사 과정에서 훈련성과 부진, 취업곤란등을 들어 선발배제

▣ 장애인 자신도 시설의 불편과 소외감 등으로 지원 기피

나. 문제점

▣ 일반훈련원에서의 경증장애인 훈련 부진

→ 94년 총 훈련인원 23,260명 중 38명

▣ 추가적인 시설·훈련장비 개선 필요

▣ 장애인에게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훈련시간 및 재료비 등 비용부담

▣ 훈련성과 부진 및 취업곤란으로 담당교사들의 의욕저하

2. 개선방안

▣ 기금을 적극 지원하여 단계적으로 각종 편이시설 완비

▣ 훈련장비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조·보강

▣ 훈련인원의 10%정도 장애인 우선 선발 의무화 -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실시

▣ 장애인 훈련인원에 대한 추가적인 교사수당, 취업알선수당, 추가적인 훈련비용 지원

3. 세부추진계획

▣ 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원의 각종 편이시설 완비

- 전국 24개 훈련원 → 1개소당 6,300만원 소요

. 기숙사·화장실등 24명 수용 기준

- 출입구·경사로·통로 및 계단손잡이·기숙사 개축

▣ 훈련원 이전, 개축시 편이시설 설치 지원

- 기간중 이전·개축 예정 훈련원 11개소에 편의시설 설치지원

. 1개소당 1원 5천만원, 장비구입비용의 20% - 35개 훈련원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94추가	'95	'96	'97	'98
■ 시설개선(1개소당 6,300만원)	6,357	-	1,153	1,768	1,968	1,468
■ 이전훈련원 시설개선(1개소당 1억원소요)	1,512	378	378	378	378	378
■ 훈련수당 등 지급	(24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 훈련수당 등 지급(1인당 월 10만원)	1,100	300	300	500	-	-
■ 강사수당등	(11개소)	(3개소)	(3개소)	(5개소)	(360명)	(360명)
■ 훈련수당 등 지급(1인당 월 10만원)	1,575	225	450	450	450	450
■ 훈련장비 개선(35개소)	420	-	(180명)	(360명)	(360명)	(360명)
■ 훈련장비 개선(35개소)	1,750	140	140	140	140	140
■ 훈련장비 개선(35개소)	250	500	500	500	500	500
■ 훈련장비 개선(35개소)	(5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I -2 교육별 특수학교의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고교과정 특수학교 75개소 중 73개소가 사립으로 재정실태가 부실하여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극히 낙후

- ▣ 고등학교 과정 연 배출인원은 1,200명 수준임
 - ▣ 중·고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양직종
 - ▣ 직업훈련교사를 대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우가 낮아 사명감 결여
 - ▣ 공단, 재활기관등과의 연계부족으로 취업부진
2. 개선방안
- ▣ 특수학교 정규과정에 전공과 설치를 지원하여 직업훈련을 내실화, 취업률을 제고
 - ▣ 사회진출후 추가적인 훈련소요 감소 유도
 - ▣ 훈련직종 지도·훈련교사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여 직업훈련 수준 향상
 - ▣ 훈련교사의 취업알선수당 등을 지급 사기양양
 - ▣ 이수자 자료를 공단, 재활기관등에 통보 적극적인 취업알선 도모
 - ▣ 직업훈련 교사 양성 배치 추진 검토

3. 세부추진계획

- ▣ 권역별, 장애별 전공과 시범학교 등 설치·운영
 - 전국 주요 대도시 10개 지역 특수학교 중 부지활용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 직업훈련 시범학교 설립·운영
 - 1차('95~'96):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지역 6개교
 - 2차('97~'98): 전북, 강원, 제주, 경기남부지역 4개교
 - 1개교당 실습장 10실(1실 6천3백만원 기준) 6억3천, 훈련장비 및 재료비 1교당 1억2천만원 (훈련장비 1억, 재료비 2천)
 - 시범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주요도시지역 10개교 선정, 전공과 설치 지원
 - 내부설비 및 장비비 1개교당 9,300만원
 - 재료비 1개교당 연간 1,000만원(직업훈련교의 2분의 1수준)
 - 전공과 설치는 지역특성·장애유형 등을 고려 공단과 협의 선정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의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공단의 지도·감독하에 추진
 - ▣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실시
 - ▣ 취업알선 담당교사 취업알선수당 지원
 - 장애인 취업알선시 1인당 3만원내외 실비보상
 - '95 ~ '96 취업인원 연 600명 기준, '97~'98 1,200명 기준
 - ▣ 공단, 재활기관에 미취업 이수자 통보→취업알선 지원

4. 년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95	'96	'97	'98
계	8,960	2,800	2,800	1,680	1,680
▣ 특수학교 직업훈련원 신설(10개교)	7,500	2,250	2,250	1,500	1,500
- 훈련실습장 신축	6,300	1,890	1,890	1,260	1,260
- 훈련장비	1,000	300	300	200	200
- 재료비	200	60	60	40	40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지원	1,340	530	530	140	140
- 훈련장비	960	480	480	-	-
- 재료비	380	50	50	140	140
▣ 취업알선 담당교사수당지급	120	20	20	40	40

I - 3. 보사부 장애인 복지시설의 직업훈련 지원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 전국 152개 수용·재활시설에 총 13,533명 수용되어 직업재활
 - 보호작업장 121개소, 근로시설 6개소
- ▣ 대부분이 보호와 단순한 치료(물리, 작업)에 그치고 있어 직업훈련으로 보기 곤란
- ▣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전문적인 직업훈련교사가 배치되지 않음

2. 개선방안

- ▣ 근로시설, 자립작업장에 장비지원 훈련 내실화
- ▣ 직업훈련교사 보수교육지원 및 양성배치 추진
- ▣ 직업훈련교사의 취업알선수당 지원 검토
- ▣ 시설이 우수한 훈련원을 집중지원하여 인정직업훈련원화
- ▣ 가능보유 장애인 및 수용인원 공단 취업알선 체계와 연결
 - 필요시 취업 전산망 연결 운용

3. 세부추진계획

- ▣ 근로시설 6개소(장비 1식 5천만원), 보호작업장 40개소(장비 1식 3천만원), 자립작업장 8개소(장비 1식 3천만원)에년차적으로 장비구입지원

▣ 무자격 직업훈련교사 보수교육→공단

▣ 인정직업훈련원으로 유도: 시설이 우수한 훈련원 선정 중점지원

▣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시설확충 응자지원 30개소(1개소당 2억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의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공단의 지도·감독하에 추진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	94추가	'95	'96	'97	'98
계	7,740	230	640	2,360	2,510	2,000
▣ 근로시설						
- 장비구입	300	50 (1개소)	250 (5개소)	-	-	-
(1개소당 5천만원)						
▣ 보호작업장						
- 장비구입	1,200	150 (5개소)	300 (10개소)	300 (10개소)	450 (15개소)	-
(1개소당 3천만원)						
▣ 지역자립작업장						
- 장비구입	240	30 (1개소)	90 (3개소)	60 (2개소)	60 (2개소)	-
(1개소당 3천만원)						
▣ 시설확충지원용						
자(1개소당 2억원)	6,000	-	-	2,000 (10개소)	2,000 (10개소)	2,000 (10개소)

I - 4. 인정직업훈련원의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삼육재활센터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은 3개 직종 1년과정, 정원 90명을 훈련하고 있으며, 수료인원의 50%정도가 2급기능사 자격취득 및 취업

▣ 덕산인정직업훈련원은 정보처리 등 2개 직종 2년과정 1급 또는 2급 기능사 양성을 위해 정원 60명 훈련, 교통불편·공과단순·고졸제한·홍보부족 등으로 모집율 및 취업률 다소 저조

나. 문제점

▣ 인정직업훈련원은 전국에 140개소가 있으나 장애인 전문훈련원은 2개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취업 및 자격취득인원이 수료자의 40~50% 수준으로 일산훈련원보다 부실

▣ 공신력·취업용이 등으로 대부분 일산훈련원에서 훈련받고자 지원

2. 개선방안

▣ 시설과 장비가 우수한 일부 사설훈련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인정직업훈련원으로 유도

▣ 일반 인정직업훈련원의 장애인 특설장 설치 주도

3. 세부추진계획

▣ 일반 인정직업훈련원 중 장애인 전문 인정직업훈련원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지원

- 현재 2개소, 앞으로 1개소 추가 희망 예상

-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 저리용자 검토

▣ 우수 훈련교사 확보 지원

- 특별수당 지급(40명 1인당 월8만원, 연간100만원) 연간 총 40백만원

▣ 훈련수료생에 대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강화

▣ 덕산 훈련원은 '94년부터 지원하므로 추가예산 필요(2.5억원)

▣ 훈련비 지원, 1인당 연간 360만원 기준(국제제과 등 2개 훈련원)

- 2개원 각 50명 총 100명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94		'95	'96	'97	'98
		기계획	추가				
계	4,580	330	250	1,000	1,000	1,000	1,000
▣ 기존인정직훈지원 (삼육·덕산)	2,980	330	250	600	600	600	600
▣ 일반 인정직훈에 대한 지원 - 훈련비(국제제과등2개원)	1,440	-	-	360	360	360	360
▣ 교사 특별수당	160	-	-	40	40	40	40

I - 5. 근로복지공사 산재재활원 인수·운영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안산재활원은 봉제·인쇄 등 47명, 광주재활원은 봉제·광고미술 42명을 훈련하고 있음

▣ 정규직업훈련이 아닌 자립작업장 운영

▣ 훈련인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예산에서 훈련보조비, 이수자 생활정착금 지급

▣ 훈련기간 2년,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나 장기체류자가 많음

2. 개선방안

▣ 재활원을 공단에서 인수, 시설개조, 전문훈련원으로 개원

▣ 산재장애인도 통합수용·직업훈련 훈련비 등을 산재기금에서 지원

▣ 지역특성을 고려 공과 및 장애특성에 따른 특화

3. 세부추진계획

▣ 현 수용인원 '95년까지 완전 배출후 시설 및 운영요원 인수

-'96 부지·건물 등 부동산은 감정가 기준 매입

-근로복지공사측 예정가격 59억원

▣ 안산훈련원 신축비용(6,631백만원)

-철거비 99백만원, 설계비 150백만원, 건축비 5,882백만원, 장비비
(3개공과 및 보일러 발전기등 포함) 500백만원

▣ 공단의 관내 지방사무소와 통합·운용 - 훈련원은 지방사무소 훈련부가 담당

▣ 인수과정성의 문제점 등을 별도 사업단 편성·추진

4. 년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95	'96	'97	'98
계	15,110	150	5,900	9,060	
▣ 안산·광주재활원 인수	5,900	-	5,900	-	-
-안산재활원	1,500	-	1,500	-	-
-안산자립작업장	600	-	600	-	-
-광주재활원	3,800	-	3,800	-	-
▣ 설계비	150	150			
▣ 안산훈련원 신축	6,481	-	-	6,481	-
-철거 및 건축비	5,981	-	-	5,981	-
-장비비	500	-	-	500	-
▣ 광주훈련원 증축	2,579	-	-	2,579	-
-생활관 증축	1,001	-	-	1,001	-
-교직원 주택	1,078	-	-	1,078	-
-장비비	500	-	-	500	-

I-6. 장애인 전문훈련원 증설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전문훈련원 1개소(일산), 인정직업훈련원 2개소(삼육·덕산)의 연간 훈련인원은 360명 수준 불과

▣ 일산직업훈련의 입학지원자 난차적으로 증가

-'91년 209명, '94년 438명

▣ 특수학교 이수자, 중도장애인, 재활시설훈련 이수자의 고급기능습득 희망

▣ 훈련원의 일부지역 편재로 지방거주 장애인의 수강 불가

▣ 대부분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을 기피

2. 개선방안

▣ 연간 총 1,000명 정도의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특화된 훈련원 2개소 증설

▣ 장애특성, 지역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특화된 훈련원 증설 필요

3. 세부추진계획

▣ 부산·대전 인구밀집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훈련원 추가 증설

-대전지역: 교통이 편리한 전국 중심지임을 감안, 210명 규모의 종합훈련원 신설

(지체·청각·시각·정신지체), 훈련기법 개발 타 훈련원에 보급

-부산지역: 210명 규모의 지체·청각장애인 훈련원 신설

▣ 공단의 관내 지방사무소와 통합·운용-훈련원은 지방사무소 훈련부가 담당

4. 년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94추가	'95	'96	'97	'98
계	44,078	12,515	8,788	14,775	4,000	4,000
▣ 전문직업훈련원증설(부산·대전2개소)	36,078	12,515	8,788	14,775	-	-
-부지매입비(1개소당 10,000평)	12,000	12,000	-	-	-	-
-설계 및 부대비	515	515	-	-	-	-
-토목공사비	300	-	300	-	-	-
-건축공사비	16,800	-	8,400	8,400	-	-
·본관·실습동, 생활관등	14,926	-	7,463	7,463	-	-
·교직원 주택	2,050	-	1,025	1,025	-	-
-기타시설(조경·오수정화)	1,090	-	-	1,090	-	-
-장비구입비	5,197	-	-	5,197	-	-
·기계·장치비	4,200	-	-	4,200	-	-
·공기구·비품	420	-	-	420	-	-
·특수시설장비	400	-	-	400	-	-
·특장차 등	177	-	-	177	-	-
▣ 훈련원 운영비(2개소: 연간 20억원)	8,000	-	-	-	4,000	4,000

II. 장애인 취업촉진사업

II-1.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 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의 장애인에 대한 구인 · 구직알선 서비스체계 부족
- 구직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 등의 체계적 · 과학적인 평가도구 및 기법의 미개발로 적재적소 취업소개 곤란
-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직종 등의 개발 미흡
- 홍보사업 아이템개발 · 홍보기법 연구 등 홍보대책 미흡

2. 개선방안

- 전국적인 구인 · 구직 서비스체계 확립과 이동상담소 운영으로 소도시지역 장애인 서비스망 확충
- 체계적 · 과학적인 직업능력 평가체제 확립으로 장애정도 및 능력에 맞는 취업알선과 직업생활 지도
-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단계별 홍보목표를 수립 · 시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선진화 이룩
 - 제 1단계 ('94 ~ '94) : 공단사업 및 이미지 홍보
 - 제 2단계 ('95 ~ '98) :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홍보
 - 제 3단계 ('98이후) : 완전통합, 일체화 홍보
- 주기적 여론조사 및 홍보효과 검증을 통한 홍보의 극대화
- 장애인의 날, 고용촉진대회, 기능경진대회 등을 통한 계기홍보
- 극복사례, 성공한 장애인, 저명인사 등을 통한 특별홍보

3. 세부추진계획

- 지방사무소 증설 및 공단 전문요원 배치
 - 주요 공단지역 등에 5개 사무소 신설
 - '94 : 7개소 → '95 : 12개소
 - 지방노동관서에 공단의 전문요원 배치
 - '96 : 20개소 (1개소당 3~4명)
 -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 운영요원 조정
 - 1급지 : 15~20명, 2급지 : 10~13명
- 이동상담소 운영 활성화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근접 서비스 지원
 - 이동상담용 특장차 배치 및 운영요원 보강

II-2. '94 : 7개 사무소에 이동상담소 운영

◦ '95 : 이동상담요원 확보 추진 (1개소당 3~4명)

◦ 취업도구 및 취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직업평가도구의 적합성 검토 및 기준마련, 체형에 맞는 평가도구 개발 · 보급(10종)
- 장애인의 잔존능력 및 적성파악후 직업소개, 직업훈련 실시

◦ 중증장애인 직업영역 확대

- 시각 ·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직종개발 · 확대
- 직업전 교육 및 현장실습, 취업장애인 사후지도 실시

◦ 등록장애인 취업욕구 조사 및 취업지도

-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기초자료 활용
- 읍 · 면 ·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등록장애인의 취업 적극 유도

◦ 장애인 통계조사 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시 필요항목 추가 (직업생활에 필요한 통계)

◦ 필요예산 기금에서 일부 지원

◦ 장애인 고용전산망 운영

- 지방노동관서 및 재활기관의 전산망과 연계 전국적인 전산체계 구축
- 고용보험 시행시 장애인 취업정보 통합 · 운영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홍보
- 주요일간지 등을 통한 돌출광고
-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 (지하철 · 시내버스 · 홍보탑 등 광고)

◦ 홍보물 제작 · 배포

- 장애인 고용지 발간 확대
- 공단사업 안내 팜프렛 제작 (매년 10,000부)
- 종합홍보지 발간 (매년 25,000부)
- 장애인 고용촉진관련 시청각 자료 제작 · 활용
- 고용촉진작품 현상공모 확대 및 발간 · 배포

◦ 전국적인 고용촉진운동 전개

- 고용촉진대회 개최
 - 연 1회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 설정
 - 매년 전국주요지역으로 확대 · 순회 개최
 - 포상실시 : 공포 장애인 · 사업주 (시상제도 개선)

• 세미나 개최 : 지방사무소

◦ 여론조사실시

- 면접·전화조사 실시 (2년주기)

- 외부 홍보전문가·방송·언론관계자·공단관계자로 구성(7인이내) 운영

- 여론조사 분석을 통한 홍보전략 및 계획수립 추진

4. 연도별 소득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4		'95	'96	'97	'98
		기계획	추가				
계	14,260.5	1,305.5	830	3,951	2,658	2,971	2,553
■지방사무소 증설	5,136.5	1,031.5 (3개소)	-	1,870 (5개소)	745	745	745
■이동상담소 운영	240	-	140 (7개소)	100 (5개소)	-	-	-
■직업평가도구 표준화	404	-	-	202	-	202	-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278	-	-	139	-	139	-
■증증장애인직역활대	752	12	-	185	185	185	185
■등록장애인 취업요구 조사·장애인통계 조사지원	500	-	-	200	300	-	-
■홍보매체활용	3,348	64	610	493	699	745	745
-T.V CF광고	320	-	-	50	70	100	100
-캠페인 광고	390	-	-	-	130	130	130
-라디오 캠페인	306	-	82	56	56	56	56
-신문돌출광고	648	37	80	99	144	144	144
-전광판 활용	282	12	-	-	90	90	90
-지하철·시내버스홍보	1,214	15	448	288	157	157	157
-홍보탑·옥교현판	188	0	-	-	52	68	68
■홍보물 제작	2,863	171	32	568	598	747	747
-기관지 발간	838	64	32	111	111	260	260
-안내팜플렛	100	-	-	25	25	25	25
-종합홍보지	740	-	-	185	185	185	185
-시청각자료	768	78	-	150	180	180	180
-작품현상공모·발간	417	29	-	97	97	97	97
■고용촉진운동	551	27	-	131	131	131	131
-대회	263	27	-	59	59	59	59
-캠페인	288	-	-	72	72	72	72
■여론조사실시	188	-	48	63	-	77	-

II-2 장애인 취업재활센터 건립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전문적인 연구·적용·교육을 위한 시설 미비
 -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하기 미약
- 직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애인 고급인력양성 계기 전무

2. 개선방안

-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활센터 건립
 -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특수학교, 훈련원, 장애인 복지시설 교사 등 요원 양성·지원
- 고용영리기법의 연구·개발·보급
- 각종 보조도구의 연구·개발·교육·적용 및 전시

3. 세부추진계획

- 주요시설 : 공단 본부, 직업재활연구소, 교육시설 등
- 시설규모
 - 부지 : 5,000평
 - 건평 : 5,000평 (연구시설 4,000평, 공단본부 1,000평)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4		'95	'96	'97
		기계획	추가			
계	26,156	-	10,000	4,752	5,935	5,469
■부지구입비 (5,000평)	10,000	-	10,000	-	-	-
■토목공사비	250	-	-	250	-	-
■설계 및 부대비	175	-	-	175	-	-
■건축공사비	12,731	-	-	4,327	5,935	2,469
-직업재활연구소 (4,000평)	9,319	-	-	4,327	4,327	-
-공단본부사무실 (1,000평)	2,856	-	-	-	-	2,113
-오수정화시설	200	-	-	-	-	-
-조경시설	250	-	-	-	-	250
-부대시설	106	-	-	-	-	106
■장비구입비	3,000	-	-	-	-	3,000

II-3 장애인고용 시범사업장 신설·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 취업조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 방안 필요
-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경영 및 고용관리기법 개발 보급 필요

2. 개선방안

- 정부(공단) 출자 49%, 기업출자 51%로 일정수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체임하에 운영
- 법정사업인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신설·운영으로 일반고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 마련
-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사업성을 높이고 경영 및 고용기법을 사업체와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수·보급

3. 세부추진계획

- 1개소당 중증장애인 100명 내외, 지원 및 보조요원 50명 내외 고용
- '96년 1개소(서울), '98년 1개소(부산) 설립 추진
- 소요인력은 공단에서 훈련 및 취업알선
- 권장업종 : 전자부품조립, 기계부품조립, 식품가공, CAD/CAM등
- 총 100억원 규모 : 부지구입 2,000평 40억원, 기숙사 10억원, 장비구입 10억원 및 설비(건평 3,000평) 30억원, 편의시설 및 기숙사 20억원, 장비구입 10억원
- 세부 소요예산은 기업에서 산정하므로 투자규모(50억원 정도)만 설정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5	'96	'97	'98
시범사업장 설립 운영	10,000	-	5,000	-	5,000

II-4. 장애인기능경진대회 및 국제기능 올림픽 참여

1. 현황 및 문제점

- 시·도 예선대회가 없어 선수수준이 낮고 참가 저조
- 공단 지방조직, 담당인력 부족으로 지방대회 개최여건 부족
- 대회 입상자에 대한 사기양양 및 기능인 우대제도 미흡

2. 개선방안

- 단계적으로 지역별 예선대회를 실시, 우수선수발굴 및 참여의식 고취
- 입상자에 대한 사기양양 및 각종혜택 부여
- 국제대회 입상을 위한 준비

3. 세부추진계획

- 기능경진대회 개최
 - '94년 : 상금인상 (1위 200만원 → 400만원)
 - '95년 : 지방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 '96년 : 서울 등 7개 시·도 지방대회 시범 개최
 - '97년 : 12개 시·도 지방대회 확대실시
 - '98년 : 전국대회를 지방순회 개최
- 국제기능 올림픽 참가
 - '94년 : 참가선수 선발 (20개 직종 : 전국대회 1위 입상자)
 - '95년 1월~4월 : 소속업체 훈련, 대회 관련자료 입수 및 대회 참가단 5월~8월 : 합동훈련 (일산직업훈련)
 - 9월 : 대회참가 (호주 퍼드시)
- 국제대회 수상자 기능장려금 지급
 - 국제대회 입상자(기존 30명, '95년 15명 예상), 1인당 평균 연간 457천원 지급

4.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5	'96	'97	'98
계	5,145	1,188	1,023	1,457	1,477
▣전국대회	1,803	389	442	476	496
-입상자상금·장려금	951	185	228	258	280
-참가선수지원비	320	80	80	80	80
-운영요원제수당	120	30	30	30	30
-기타수용비	412	94	104	108	106
▣지방대회	2,480	-	560	960	960
(1개도시당 80백만원)			(7개시도)	(12개시도)	(12개시도)
▣국제대회	862	799	21	21	21
-참가비	449	449	-	-	-
-기능강화훈련비	350	350	-	-	-
-기능장려금	63	-	21	21	21

III.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 미약
 - 생산성저하를 우려한 경증장애인만 선호
 - 장애인 고용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 사업주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제도 미흡
- 중증장애인 고용 및 특정 장애인 고용촉진 미흡

2. 개선방안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여건 조성
-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자립기반 지원
- 기금운용의 공단이관 방안 검토

3. 세부추진계획

- 지원·장려금의 인상 지급
 - 장애인 고용시 생산성 결손을 보전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초과 고용시 지급하는 지원·장려금 인상
 - 지원금·장려금을 부담금, 지원금의 50%에서 부담금의 80%로 인상 지급
 - '94년 1,000명 기준 '95년이후 300명 증가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계	'94	'95	'96	'97	'98
지원·장려금		9,900	1,200	1,500	2,000	2,400	2,800

◦ 중증장애인 범위 설정

- 일반 사업장에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범위를 설정
- 범위설정방안
 - 노동능력에 따른 장애인 분류는 기술적으로 지극히 곤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기준하여 1,2급으로 규정
-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신설

-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르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 중증장애인 1인을 2인으로 인정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부여

- 고용인원 증가 및 부담금 감소 예상액

2. 관계법령 및 규정의 정비(예상부담금 감소액 : 1,701억 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5	'96	'97	'98
인원(명)	8,514	1,701	1,922	2,250	2,641
부담금감소	15,223	3,041	3,437	4,023	4,722

▣ 중증장애인 고용보조금 지급 제도

-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생산성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장애인 임금의 일부를 보조
 - 지급방법
 - 1차년도 : 최저임금의 50%내외
 - 2차년도 : 최저임금의 30%내외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지원 검토 추진

- 중증장애인의 직장생활 보조요원 인건비 일정부분 지원
 - 지원대상: 수화통역자·통근보조요원·작업지도원·직업생활상담원 등
 - 지원방법: 임명시부터 최저임금 수준으로 2년간
-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설치의 유·무상 지원활대
 - 용자한도액 상향조정
 - 현 용자한도액 2억원→3억원
 - 재무구조를 분석, 무담보용자제도 실시

▣ 무상지원액 지원기준 확대

- 일정수 장애인 고용사업체, 고용계획 사업체 신청시 우선 지원

- 유·무상지원 사업을 점차적으로 공단 이양·활성화 도모

▣ 장애인 복지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고용의무 기업이 시설을 투자하거나 하청을 증 경우 그 총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에서 감면
 - 대상사업체: 의무고용 사업주로서 근로시설·보호작업장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하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감면기준: 하청 총금액의 30%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금 감면
 - 부담금 감소: 연 16억원 예상

- 특정장애인 고용확대방안 - 시각·정신지체 등 특정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적종 및 직무를 유보
- 유보직종 확대 : 정신지체, 시각, 편마비 상지 장애인

장애인 우수고용 사업주 우대강화

- 장애인 우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여 고용의욕을 고취
-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설치의 유·무상 우선 지원 및 우수사업주 포상
- 조달청 납품업체로서의 우선권 부여 추진

관계부처와 협조 세제혜택 검토 추진

- 취업장애인 재정보증제도 신설
- 취업시 재정보증자가 없을 경우 기금에서 보험가입 보증
-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타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보전제도 도입 검토

보증보험 회사와 협조, 신규상품 개발 추진

- 보증보험 회사와 협조, 신규상품 개발 추진

보험료는 기금에서 지원

- 부담금 징수 및 각종 지원·보조금 등 지급사무이관
- 공단사업을 활성화하고, 관 주도 위주 각종사업 추진 경직성 배제
- 지방조직 확충시 부담금 징수기능을 공단에서 수행
- 사업주를 위한 유·무상 지원을 공단의 기술지도·심사기능과 연계
- 향후 공단조직을 확충: 기획부, 기술지도부, 경리부, 심사부

4.년도별 소요예산

구분	계	'94		'95	'96	'97	'98
		기계획	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고용	51,193	9,700	-	10,256	11,333	9,606	10,298
사업주 지원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원·장려금	9,900	1,200	-	1,500	2,000	2,400	2,8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2,190	1,000	-	190	440	680	88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별고용관리비	7,603	1,000	-	2,566	2,893	526	618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개선무상지원	10,500	2,500	-	2,000	2,000	2,000	2,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개선용자	21,000	5,000	-	4,000	4,000	4,000	4,000

IV. 향후조치계획

- 관계부처 협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사업확정
- 관계법령 및 규정의 정비 - '94년도증
 - 각종 제도개선 사항은 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추진
 - 각종 규정, 고시 등 개정추진
- 예산 확보 및 반영 추진
 - '94년도 추가사업 소요예산 239억원은 '94.6월중 기금운용계획을 수정, 사업 추진
 - '95년도 사업예산 537억원은 '95 예산편성 반영 추진
- 고용촉진사업 공단 이관 추진
 - '95년도 직업훈련, 사업주·장애인 지원사업 이관→공단 예산에 반영
 - 각종 규정 개정, 지침 시달 준비
 - '96년 부담금 징수, 지원·장려금·보조금 지급 의무, 기금관리 업무 공단 이관

산재후방대책회의는...

[산재후방대책회의]는 지난 94년 7월 산업재해후방의 일 공동사업을 전행하면서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노동단체를 중심으로하여 일상적인 산재후방투쟁의 조직과 계획적 내용의 마련을 목표로 95년 11월 결성되었습니다.

[산재후방대책회의]는 94년 11월 노동자대회서 '산재후방을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안을 중심으로한 선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95년 10월과 96년 3월에 걸쳐 산업재해 후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출연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재해후방 운동의 조직적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재후방대책회의]에는 전국노동조합연맹의회, 전국노총문동안여행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대중질학연합, 영동조선업연고회, 전보연동정년단체협의회, 산업재해노동사업회회, 편진 노동자연대, 전국산업재해후방민족연합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단체소개

전국산업제작주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는...

산업재해추방의 달은 15살 나이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군을 비롯하여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각계의 단체들이 힘을 한데 모으는 공동투쟁의 기간입니다.

올해도 산업재해추방의 달 사업을 위해 민주노총(준)과 전노협을 위시로한 노조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 [산재추방대책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이 함께 [전국산업재해 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국 산업재해 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는 95년 산업재해 추방의 달 사업목표를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인한 노동자 건강문제의 악화를 적극적으로 폭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요구를 선전하고 법개정투쟁을 조직한다'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을 강화, 산재추방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로 잡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추방대책회의는...

[산재추방대책회의]는 지난 94년 7월 산업재해추방의 달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노동단체를 중심으로하여 일상적인 산재추방투쟁의 조직과 정책적 내용의 마련을 목표로 94년 11월 결성이 되었습니다.

[산재추방대책회의]는 94년 11월 노동자대회시 '산재추방을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안을 중심으로한 선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94년 10월과 95년 2월에 걸쳐 산업재해 추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재해추방 운동의 조직적 확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추방대책회의]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민중정치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레이오비상대책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단체소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노협)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건설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입니다.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발판으로 87년 산업재해 노동자 연맹이 건설되었고, 88년 산업재해노동자회가 또다시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이후 개별적인 단체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통한 강고한 산재추방과 노동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힘을 한곳으로 결집하여 투쟁하는게 효과적이다는 집행부와 회원들의 공유 속에서 90년 10월 통합식을 거행하였고,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완전히 추방하고 산업재해노동자들의 권리쟁취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첫째. 상담활동

산업재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임금, 치료, 보상, 민사소송(합의) 등을 올바른 원칙과 경험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둘째. 병원방문과 복지활동

산업재해자의 경조사 방문과 친목 또는 체력증진 활동등의 복지활동과 병원에 묵양중인 산업재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위문 방문활동 등을 통해서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좌절을 극복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 및 홍보활동

[사진] [슬라이드] [산재보상교실] [산재노동자공동소식지] 등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국의 산업재해노동자를 대변하며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사회화시키고 여론화시켜 산업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째. 산업재해추방과 관련하여 연대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노동계와 보건의료계와의 결합하여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선포하여 7월 공동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산재추방을 위해서 민주노총(준)과 전노협 산안국을 위시한 대공장과 함께 연대투쟁을 통한 노동자 단결로 노동해방과 민중들이 대접받는 세상 건설을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락처: 867-8230, 868-2379

◆ 단체소개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전장협)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문제를 보다 올바른 방향에서 풀고자 노력하는 장애인 운동단체입니다. 사회로부터의 격리, 고용기회의 박탈, 노동에서의 배제라는 장애인 문제는 이 사회의 자본주의경제구조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구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인식의 문제와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을 더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 양 측면이 함께 변화하지 않고는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반해서 전장협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가능한 향상시키고,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인문제의 본질을 알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협은 장애인문제의 해결과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습니다. 전장협은 장애해방·인간해방이 되는 그 날까지 장애대중과 함께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대중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새날 도서방

새날 도서방은 개인적, 사회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책을 통해 일부분이라도 문화의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활동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을 중심으로 도서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계기들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검정고시, 고등학교검정고시, 대학입학검정고시를 준비하는 3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수업이 진행되며, 장애인문제·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한 강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점분과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모여 노점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장협의 각 지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사무국 : 242-3044~5 fax:216-0683

서울지부 : (02)441-6558 (김철호 지부장)

경남지부 : (052)65-0245 (홍순석 지부장)

강원지부 : (0391)43-5231 (배문주 지부장)

제주지부 : (064)54-2061 (오성진 지부장)

경기지부 : (0342)721-8777 (노민규 지부장)

대전지부 : (042)220-9272 (최일권 지부장)

광주지부 : (062)265-8521 (이종균 지부장)

충남지부 : (0418)545-6108 (차상록 지부장)